

## 대구미문화원 폭파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면소 선고를 환영하며

- 국가폭력에 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의 공소시효는 없다!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을 빌미로 수많은 시민들이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미문화원 폭파 사건과 관련이 없었던 시민(당시 대학생) 5명의 불법 구금돼 고문 등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늦었지만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 사과를 했다.

당시 대구 미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TNT 등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사건으로 전두환 정권과 공권력은 합동신문조를 꾸려 1년간 무려 74만여 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에게 고문, 불법 구금, 허위자백 강요 등을 일삼았던 대구 경북지역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약 30일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하고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반인권적 사건임이 밝혀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이때 ‘고문기술자’로 칭해지는 이근안이가 대구로 직접 출장을 와서 불법적인 고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지난 2016년 3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재심결정이 이루어져서 피해자에게 억겁의 세월이라 할 수 있는 35년 만에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법원의 무죄선고가 5명의 피해자들에게 지난 35여년의 고통의 세월과 아픔을 헤아릴 수 없으며 또한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면소 선고가 어떠한 이름의 국가폭력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74만여 명이라는 수많은 시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를 위한 노력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19. 10. 02.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재판 경과

- 1983년 9월 22일 저녁 9시 30시경 : 대구시 중구 삼덕동 대구 미국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TNT 등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
- 이후 전두환 정권은 합동신문조를 꾸려 1년간 74만여 명을 수사, 진범을 검거하지 못하고 수사종결
- 수사과정에서 경북대 '학생운동가'인 박종덕 등 5명은 '미문화원 폭파사건' 과 무관하게 고문에 의해 허위 조작하여 '집회 및 시위 예비음모' 죄목으로 구속
- 1984년 : 검찰은 경북대 '학생운동가'인 박종덕 등 5명에게 '국보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  
1983년 함00, 손00, 안00, 우00 씨는 집시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고, 박00 씨는 집시법과 국보법,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 선고
- 2010년 : 진실화해위는 “박종덕 등은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과 관계없이 반국가단체 고무·찬양·동조죄 등으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조사 결과, 경찰이 약 30일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하고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반인권적 사건임이 밝혀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권고
- 2016년 3월 14일 : 대구지방법원(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에서 재심결정
- 2018년 10월 25일 : 대구지방법원의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
- 2019년 10월 01일 : 대구지방법원의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무죄·면소 선고